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차령연장)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지원책으로 차령 만료가 임박한 일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 기준 적합한 경우 차령을 1년 연장 ※ 시행일 : 2020. 9.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별표2(시행령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차종	배기량/차령	차령연장 대상 (차량기산일)	차령 연장 신청기간 (‘20.9.1.시행)
승용차 (개인택시)	2,400cc 미만(7년)	‘11.9.1. ~ ‘14.6.30.	‘20.9.1.(7년) ~ ‘23.6.30.(9년) 內 본인차령 만료 2개월 이내
	2,400cc 이상(9년)	‘09.9.1. ~ ‘12.6.30.	‘20.9.1.(9년) ~ ‘23.6.30.(11년) 內 본인차령 만료 2개월 이내
전기/승합 자동차	9년	‘09.9.1. ~ ‘12.6.30.	‘20.9.1.(9년) ~ ‘23.6.30.(11년) 內 본인차령 만료 2개월 이내

○ 참고사항

- 차령연장 대상 중 시행 당시 이미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차량 또는 시행 전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임시검사(정기검사 포함)를 받은 경우 동일하게 1년 연장된 것으로 봄.
- 하단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용자동차는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1년 연장 가능.
※ 단, 연장되기 전까지는 차령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함.

차	배기량/차령	차령연장 대상 (차량기산일)
승용차 (개인택시)	2,400cc 미만(7년)	‘11.9.1. ~ ‘11.10.31.
	2,400cc 이상(9년)	‘09.9.1. ~ ‘09.10.31.
전기/승합자동차	— (9년)	‘09.9.1. ~ ‘09.10.31.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근거 농 마련(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5항, 제7조의2, 제9조의2제4항, 제9조의3 및 제10조의2 신설)

1)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위원회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함.

2)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고,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함.

나. 도시재생사업 인정대상 사업 추가(제32조의2제1항)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가함.

다. 도시재생사업 인정기준 명확화(제32조의2제4항)

1) 사업 시행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명시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 등 시급한 사업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중복될 수 있도록 함.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대상에 포함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

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어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에 대한 공급 방식 보완(제51조제3항)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어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은 혁신지구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은 관계 법령에서 공급 방식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0년 9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

김천미

●대통령령 제3098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 종	사 업 의 구 분		대 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전기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전기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북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본문 중 “제1호에 따른 차령(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차령을 말하고, 제1호 비고에 따라 2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을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의 차령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실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1년까지의 기간은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 실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차 종	사 업 의 구 분		대 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전기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4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전기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인 자동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피해를 입은 버스 및 택시업계의 대폐차(代廢車)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을 1년 더하여 줌으로써 교통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버스 및 택시업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804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확”을 “재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컴퓨터”를 “정보화기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5년 전 농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를 “농업 종사 경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양묘업, 밭”을 “양묘업 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컴퓨터”를 “정보화기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년 전 임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를 “임업 종사 경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척수, 톤수 및 제질”을 “척수 및 톤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컴퓨터”를 “정보화기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5년 전 어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를 “어업 종사 경력”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생활편의시설”을 “생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작목반, 어촌계 및 농어업 법인”을 “농어업 법인 및 조직, 생산자 조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가구를 단위로 하고”를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로, “행정리를 단위로 하여”를 “행정리 단위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